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의 논의내용과 산업계대응방안

## 1. 서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한 의미는 국제환경협약이 가지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다.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차이에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규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적극적으로 고도 전략적인 새로운 대응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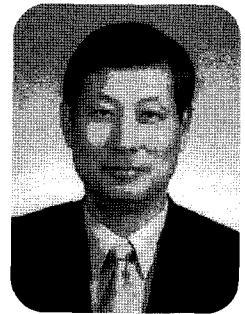
산업계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1 단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은 단지 에너지절약에 국한되는가?
- 2 단계: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3 단계: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제1단계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에 대응방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유해물질사용업종과 같은 업종별 차이를 가지는 대응전략의 수립이다. 마지막 단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산업계의 대응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 확보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본고는 지속 가능한 기업경쟁력의 확보에 주안점을 가지고 작성하고자 한다.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경쟁력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먼저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가지는 정치적/경제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영목표수립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입장을 정책수립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 준 용  
LG환경·안전연구원/원장

## 2. 제8차 당사국총회결과의 정책적인 함의

### 2.1.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사항

선진국의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온실가스는 하나의 대기층을 새로이 형성하여 마치 지구가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과 같

게 된다. 지구는 온실에서와 같이 점점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도서국가들이 점점 가라앉게 된다. 또한 기후 변화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증가시키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sup>1)</sup>이라는 원칙설정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구온난화현상의 주범에게 책임을 지우는 '오염자부담원칙'이 선진국에게 적용된 것이다. 선진국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어서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약내용을 확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평균 5.2%의 감축(1990년 대비)이라는 총량적인 감축의무규제를 선진국과 동구권의 일부국가를 포함한 38개국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와 같은 교토메카니즘을 채택하였다. 이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선진국에게 의무 감축량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이 같은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

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업수익의 일정부분을 개도국 재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먼저 배출제한량을 부여한다. 의무감축국 사이에서 상호간의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교토의정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55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두 번째의 조건은 비준에 참여한 선진국들의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90일 이후에 의정서내용에 관한 법적구속력이 발효된다. 2002년 11월 현재 96개국이 비준하였고, 아직까지 선진국 CO<sub>2</sub> 배출량의 37.4%에 그쳐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상반기에 있을 러시아 비준의 성사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2. 제8차 당사국총회의 성과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는 CDM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한 것이다. 지난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성된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CDM 운영절차와 지침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서 당사국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사회와 집행부의 업무에 관한 규칙이 결정되었고, 실질적인 CDM사업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합의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과는 선진국의 규칙적인 보고서작성에 관한 협상의 타결이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이 분야에 관한 교육

1) 1994년에 발효되었다. 2002년 11월 현재 186개국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93년에 가입하였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을 확대한다는 협약 6조에 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이다. 국가보고서 준비, 역량형성, 기술이전, 교육홍보(협약 6조)등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높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 단계 진보된 점이 이번 협상결과의 성과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제7차 총회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특별기금 및 최빈국기금 조성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지구환경금융(GEF)이 작성하여 차기총회에 제출기로 합의하였다. 본(Bonn)과 마라케시(Marrakech)에서 조성된 세 개의 기후변화기금 중의 하나인 "최저개발국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의 실행지침이 합의된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시행방법이다.

제8차 당사국총회가 지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2)</sup>

첫째, 미국이 협약에 대한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방해전략으로 전환한 점이다. 2001년 여름에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의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은 2001년 말에 열린 마라케시 회의까지는 지켜졌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협상의 진전을 방해한 것이다.<sup>3)</sup>

둘째, 유럽연합은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개도국을 반대편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상을 결렬시키는 주된 요인을 제공하였다. 선진국의 의

무감축을 이행하기 전에 개도국에 수량화된 의무감축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개도국에게 의무부담방법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유럽연합의 입장이 대표단에게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 2.3. '델리선언'의 평가

8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델리선언은 교토의정서 기준을 축구하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각 당사국의 특수한 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개발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한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수자원·에너지·건강·농업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핵심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목적과 통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결과에 기초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환경부, 2002).

또한 환경부의 회의평가에서 제8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언문의 채택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선도적 역할강조 등 개도국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U 등의 선진국은 개도국의 신규의무부담, 개발보다는 기후변화방지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은 선진국의 우선적 의무이행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우선적인 개발원칙을 주장하고 있다(환경부, 2002).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질, 인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지방들은 교토

2) H.E. Ott/B. Brouns, 2002.11.02.

3)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러한 미국전략을 '석유산업의 이익이 지구온난화보다 앞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표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대응전략

| 기존의 전략   |
|--|
| · 기후변화협약<br>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약                      |
| · 생산공정단계 중심<br>· 환경성과를 강조하는 환경경영               |
| ·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의 개별적인 접근                          |
| 새로운 전략   |
| · 통합적인 환경규제<br>유독성물질제한과 자원절약(자원생산성)            |
| · 제품과 소비단계<br>· 환경성과와 재무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br>지속가능경영 |
| · 대기정책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br>환경규제의 통합적인 대응전략       |

의정서 기준을 표명했으며, 캐나다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정부는 12월 초에 교토 의정서의 기준안을 의회인 Duma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은행들과 보험회사들도 교토의 정서의 발효를 수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미국과 석유생산국들이 기후변화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이행과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전의 약속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다.<sup>4)</sup> 개도국(G77과 중국)들은 석유생산국인 OPEC과 미국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작은 도서국가들의 모임인 AOSIS조차도 자신들의 고유한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였다. EU와 개도국들의 관계악화도 이번 당사국총회의 부정적인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국인 인도의 노력으로 기

후변화의 적응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인도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설정과 기후변화의 적응이 최우선 순위라고 언급하였다. 대표단에게 제출된 건의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sup>5)</sup> 기대한 협상진전은 없었으나 7차 당사국총회와 2002년의 WSSD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이 더 이상 후퇴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3. 산업계 대응방안

#### 3.1. 기후변화적응과 지속가능경영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도에 따라서 각국의 산업경쟁력이 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상품시장에서도 감축노력이 미흡한 기업상품을 규제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제도의 적용과 응용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쟁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이번 뉴델리선언에서도 수차례나 강조된 교토의정서의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장단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대응전략을 위의 표에서와 기존의 전략과 새로운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존의 대응전략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이 주된 방법이었다. 또한 생산공정단계에서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주안점으로 폐기물처리에 비중을 둔 것이다. 이는 환경관리를 통한 환경성과를 강조하는 환경경영의 단계인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다른 환경규제를 구별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단계이다.

4) 'Klimagipfel in New Delhi: Formale Nullrunde, informeller Erfolg'

5) 이 때문에 인도의 '과학과 환경연구소'의 Sunita Narain은 '이로써 미국은 협상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도표 2〉 통합경영전략의 의미

| 구 분    | 방어경영    | 예방경영          | 개방경영          | 지속가능경영           |
|--------|---------|---------------|---------------|------------------|
| 활동주체   | 환경경영담당자 | 생산라인          | 회사전체          | 전체(중요한 이해당사자)    |
| 행동변화요인 | 법률규제    | 효율성           | 전략적인 성과평가     | 사회적인 인정          |
| 측정     | 사후관리    | 사전예방          | 공급관리          | 지속가능성측정          |
| 기업성향   | 방어중심경영  | 수동적, 환경비용 최소화 | 적극적인, 환경편익극대화 | 혁신적인 (지속가능성의 고무) |

Jeucken, M.(2001): 46.

새로운 전략은 제품의 생산단계와 더불어 소비 단계도 환경관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점에서 기존의 전략과 차이점을 가진다. 생산자책임을 확대하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서 생산요소인 자원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실시로 휴대폰의 폐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면 휴대폰소재의 사용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새로운 대응전략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환경 규제와 통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이 환경정책수립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대기질보존 정책과 유독성물질의 사용금지와 같은 통합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는 기업경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경영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환경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재무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이 되는 것이다.

〈도표 2〉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순환형 사회에서의 기업경영전략의 변화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먼저 사후적인 환경관리는 방어경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전적인 차원의 환경경영은 예방경영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개

방경영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공급관리를 통해서 원료에서 부품 그리고 완제품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을 기업경영에 도입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산업체나 공장의 생산공정보다는 소비단계와 폐기단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소비부분에서의 생태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환경정책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 환경정책의 전환을 우리 기업들은 감지하고, 대응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럽연합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큰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상품수출에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현지 상품과의 경쟁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이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치평가에서도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될 것이다.

### 3.2. 교토메커니즘의 대응전략

#### 1)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전략

텔리선언에서 강조한 '기후변화의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후변화협약이 이제는 단순히 온

〈도표 3〉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              |  |
|--------------|--|
| 에너지<br>다소비업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협약 체결확대</li> <li>·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및 금융지원(3000억원)</li> <li>· 동종업체간 기술교류를 위한 기술정보협력사업(ESP) 확대 추진</li> </ul>  |
| 반도체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C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7년 기준으로 10% 감축 합의</li> <li>· 반도체 업체의 PFC 감축 모니터링 및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지원</li> </ul>  |
| 자동차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집행위와 협약체결<br/>(한국은 2009년까지 CO<sub>2</sub> 배출량을 140g/km까지 감축)</li> <li>· 산자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미래형 자동차개발추진(2002년)<br/>(자동차 CO<sub>2</sub> 배출량 70g/km 수준 기술개발)</li> </ul> |

산자부, 2002

실가스감축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의무감축량 시행에 따른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현실적인 실행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직접적인 총량규제보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에서는 경제적수단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되어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EU집행위와 한국자동차협회간 자발적협약(1999년 5월) 그리고 세계반도체협회에서 PFC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1999년 4월)등이 그 예이다.

배출저감실적인증제도(레지스트리 시스템)는 각 산업체의 배출저감 노력과 성과를 인증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인증과정을 통하여 산업계의 배출저감노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등기거래시스템에 등재해주고 향후에는 저감크레딧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이 강력한 투자요인으로 작동하며,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계의 조기실천(Early Action)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개도국 의무부담협상에서는 추가 감축의무 국가의 수, 기준연도 설정, 감축방식 등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우선 개도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가 추가감축 국에 포함되는가가 중요하다. 많을수록 새로이 의무부담을 받는 개도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ASEAN 국가들과 중국과 인도가 의무감축 대상국이다.

## 2)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대응전략

개도국으로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청정개발체제이다. 한국정부는 개도국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새로운 참여방식을 요구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는 개도국에서도 감축분을 인정해주는 유연한 체제가 필요함을 기후변화협상에서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간의 CDM인 unilateral CDM의 허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수행으로 얻어진 배출량감축인증(CERs,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의 보유이전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개도국인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청정기술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아래의 〈도표 4〉에서 제시한 '대안 1'을 들 수 있다. 한국이 기후변화협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도국간의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이다. 현재는 의무감축국이 아닌 선진개도국이 후발개도국에 청정기술을 전해주고, 여기서 발생



〈도표 4〉 CDM 대응방안 비교

| 구 분    | 대안 1                                  | 대안 2         |
|--------|---------------------------------------|--------------|
| 1. 목 표 | · 배출권 조기 확보                           | · 청정기술 시장선점  |
| 2 방 법  | · 후발개도국에 청정기술이전 (Unilateral CDM)      | · 선진국기술 우선도입 |
| 3 호 과  | · 국내·외 배출권거래시장참여<br>· 국내에 CDM 인증기관 설립 | · 청정생산체제 구축  |

하는 배출권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는 선진개도국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대응방안은 〈도표4〉에서 ‘대안 2’로 표현한 방법으로, 개도국으로서 한국이 청정기술을 이전받는 방법이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독일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CDM 사업의 일환이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사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와 국내기업이 자본과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CDM이다. 이러한 사업은 선진자본과 청정기술유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정기술이전은 개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후발개도국의 온실감축사업에 참여하는 즉 CDM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멕시코, 스위스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공동 대처하겠다는 방안이다. 산업계에서도 해외투자시에 배출량감축을 인정하고,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기준선(baseline)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사전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선진국들이 CDM사업의 조기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win-win 게임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도국입장에서는 앞선 청정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기에 환영하는 것이고, 선진국입장에서도 배출량감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입장 특히 선진개도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개도국에서 시장선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다. 이미 선점된 환경시장에 한국이 후발주자로 진입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청정개발체제에 흡수원사업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이다. 흡수원인정은 EU에서 일본과 캐나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한 발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환경단체에서 반대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정받기 위한 흡수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이 생장속도가 빠른 나무들만을 식재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 가지 종류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 일은 천연 숲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흡수원사업은 가난한 토착주민들이 살고 있는 값싼 땅에서 시행되어 원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산림파괴를 초래하는 모순을 가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CDM/JI라는 교토메카니즘의 개발은 곧 온실가스의 감축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의무감축국의 아이디어이다. 한계비용의 감소라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을

〈도표 5〉 산업계 입장

|             |   |
|-------------|---|
| 1. 국제협상     | · 과거의 누적된 배출량강조(선진국이 80% 책임)                        |
| 2. 개도국 기업입장 | · 수혜자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재활용기술 도입                           |
| 3. 정책 우선순위  | · 우선순위의 선정과 진행속도 조절필요<br>·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일정과 방법의 재검토 |

줄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안인 것이다. 배출부과금과 같은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환경세라는 경제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환경문제를 시장유인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방안인 것이다.

### 3.3. 정부정책 참여

정부정책의 수립에서 산업계의 입장은 〈도표 5〉에서와 같이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제협상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온실가스 방출량보다는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선진국의 온실가스방출량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먼저 수혜자의 지위를 한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EU에서 실시하는 환경규제에서 제안되는 청정기술을 무역규제에 앞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서 개별 기업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협조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시범사업의 실시시기도 다

시 재조정되어야 하고,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자발적으로 상호간에 배출권을 모의거래하여 실행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선진/개도국간 기술이전 전문 가교의개최, 2002년 4월)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sup>6)</sup>하고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제1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GDP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수준의 설정, 1997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교토메카니즘에 참여한다는 독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도 스위스, 멕시코와 함께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제1차 의무기간의 기준연도가 1990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의무기간의 개도국의 기준연도는 1995년 또는 2000년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의 총량규제방식은 교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개도국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적절한 경제성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지표로 '온실가스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GDP)가 대안으

6) 2002년 5월과 7월에 기후변화협약 한·멕시코 공동세미나 개최(정례화 추진). 2003년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도표 6〉 정부의 추진사업

|   |
|---|
| <b>정부의 기존대책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과 상호보완성을 유지</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li> <li>·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2001-2006)</li> <li>·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1996-2005)</li> <li>·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1999-2011) 등과 보완성 유지</li> </ul> |
| 제8차 당사국총회(COP-8)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종합대책에 반영   |

국무조정실, 2002.11.5.

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1인당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도표 6〉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추진사업이다. 산업계는 이러한 추진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재무성과를 올릴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비준안 국회통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서 추진중인 제2차 정부종합대책(2002.03) 등을 소개하면 아래 〈도표 7〉과 같다. 이 대책에 의하면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2005년 전까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

〈도표 7〉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

|                                       |
|---------------------------------------|
| 1.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
| 2. 자발적협약, ESCO, 천연가스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 |
| 3.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
| 4.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
| 5. 협상참가, 의무부담 방안 연구 등 협상대응능력 강화 지원    |

산자부(2002.11.5)

건설정책이나 국토개발사업에서도 사전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관련정책은 일관성있는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산업계의 예상이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은 기존정책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집중되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4. 결 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설정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선진국에게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선진국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서 각 국의 산업경쟁력이 평가될 것이다. 또한 감축노력이 미흡한 기업의 상품을 규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를 통

한 새로운 국제경쟁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제8차 당사국총회의 주요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CDM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한 것이다. 이사회와 집행부의 업무에 관한 규칙이 결정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합의된 것이다.

둘째, 선진국의 국가보고서 준비, 역량형성, 기술이전, 교육홍보(협약 6조) 등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재정체계 운영기구에 추가 지침으로 제시한 점이다.

셋째, 지구환경금융(GEF)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제7차 총회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특별기금 및 최빈국기금 조성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총회에 제출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이행방법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업종별 차이를 두는 대응전략의 수립이다. 에너지다소비업종과 유해물질사용업종은 교토메커니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가 많은 정유업종은 배출량감축과 배출권거래제에의 적용이 중요한 문제이다. 반면에 전자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금지과 재활용규제정책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받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보다는 청정개발체제가 더욱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산업계의 대응전략이 수립되어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확보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협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첫 번째 회의가 2003년 12월 1~12일에 이탈리아

아에서 열린 후에야 다시 교토의정서의 내용에 관한 다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유럽연합과 개발도상국 간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뢰회복 이후에야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석유산유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환경부(2002.11):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보고.
- [2] 산자부(2002.11.5):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너지 산업부문 대책, 국회(정기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보고자료.
- [3] 국무조정실(2002.11.5),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제2차 국회 기후변화협약특별위원회 보고자료.
- [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COP8 정리.
- [5] H.E. Ott/B. Brouns(2002.11.02), COP 8, Zum Ausgang der Verhandlungen, Von Hegemonie und Heiligen Kuhen Bericht von der Klimakonferenz in Neu Delhi.
- [6] Jeucken, M.(2001), Sustainable Finance & Banking,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인터넷 자료**

- [1] [www.iwr.de/re/iwr/02/10/2205.html](http://www.iwr.de/re/iwr/02/10/2205.html).
- [2] [www.bundesregierung.de/Themen-A-Z/Umwelt/Nachrichten](http://www.bundesregierung.de/Themen-A-Z/Umwelt/Nachrichten)
- [3] [www.germanwatch.org/rio/klimagipfel.htm](http://www.germanwatch.org/rio/klimagipfel.htm)
- [4] [www.umweltbundesamt.de/index.htm](http://www.umweltbundesamt.de/index.htm)
- [5] [www.vistaverde.de/klima](http://www.vistaverde.de/klima)
- [6] [www.wupperinst.org/Seiten/Abteilungen/klima.html](http://www.wupperinst.org/Seiten/Abteilungen/klima.html)